

제정일	2004.09.16.
개정일	2025.04.07.
주관부서	법무팀
전결권자	대표이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규정

한화엔진 주식회사

목 차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4
제2조 (적용범위).....	4
제3조 (용어의 정의).....	4

제 2 장 조직 구성 및 업무 분장

제 1 절 최고경영자의 의무와 권한

제4조 (최고경영자의 의무).....	6
제5조 (최고경영자의 권한).....	6

제 2 절 자율준수관리자

제6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6
제7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및 권한).....	7
제8조 (CP 전담부서).....	8
제9조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전담부서의 독립성)	8

제 3 절 임직원의 의무

제10조 (임직원의 의무)	9
----------------------	---

제 3 장 CP 의 운영

제11조 (CP 운영 현황 및 성과 검토).....	9
제12조 (자율준수편람)	9
제13조 (CP 교육)	10
제14조 (사전업무협의제도).....	11
제15조 (위험성 평가).....	11

제16조 (효과성 평가).....	12
제 4 장 내부고발시스템	
제17조 (내부고발시스템).....	13
제 5 장 제재 및 포상	
제 1 절 제재	
제18조 (원칙)	13
제19조 (제재 절차)	13
제20조 (제재의 종류 및 기준).....	13
제 2 절 포상	
제21조 (포상)	14
제 6 장 문서관리	
제22조 (원칙)	14
제 7 장 기타	
제23조 (개정)	15
제2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15
제25조 (위임)	15
(별표 1)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16

공정 01-00-00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정 2004-09-16

제5차 개정 2025-04-0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이하 “이 규정”이라 한다)은 임직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법규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이 규정의 준수를 통하여 공정거래법규 준수 및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예방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임직원을 법 위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②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항상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법규를 비롯하여 회사의 윤리경영 및 상생협력 관련 정책과 관련된 모든 규정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되므로 모든 임직원들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법규와 관련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된다. 따라서,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프로그램(CP)”은 회사와 임직원이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규정, 교육, 감독 등을 포함한 회사 내부의 준법 시스템 및 준법 활동 일체를 의미한다.
2. “공정거래법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법률, 시행령, 기타 규정 일체를 의미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법규에 포함한다.

3. “CP 관련 사내 규정 등”은 이 규정을 포함하여 회사가 효율적인 CP 운영을 위하여 제정·시행하는 일체의 규정(세칙, 매뉴얼 등 명칭과 형태를 불문한다)을 의미한다.
4. “최고경영자”는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업무집행사원 등 상법 제170조에 따른 회사의 종류와 관계없이 외부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결정할 권한을 갖는 최고책임자를 의미한다.
5.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주주총회를 제외하고 주요 사안에 대하여 의사결정권한을 갖는 회사의 최고 기관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를 의미한다.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최고경영자를 의미한다.
6.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의미한다.
7. “CP 전담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CP 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8. “임직원”은 최고경영자를 포함하여 회사의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및 임시직을 불문하고 회사로부터 위임 또는 관리, 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9. “사전업무협의제도”는 공정거래법규 위반소지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의 실행 여부에 관하여 협의체를 통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10. “평가”는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CP 관련 보고서 등을 통해 회사 임직원들의 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 CP가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조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11. “제재”는 회사 임직원들에 의해 구조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정거래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징계를 시행함으로써 회사 임직원들에게 CP 의식을 고취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12. “포상”은 CP를 모범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회사의 발전과 고객, 관계사 및 협력사의 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임직원들에 대하여 제공하는 혜택을 의미한다.
13. “자율준수편람”은 회사 임직원들에게 CP의 이해 및 공정거래법규 준수意識의 내재화 등을 위하여 CP 운영 기준, 절차, 사례 등 CP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한 지침서를 의미한다.
14. “문서관리”는 회사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문서에 대하여 보관, 보존, 폐기 등에 이르기까지 서류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2 장 조직 구성 및 업무 분장

제 1 절 최고경영자의 의무와 권한

제4조 (최고경영자의 의무)

- ①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CP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CP 실천의지를 선언하고, 이를 임직원들에게 수시로 전달하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최고경영자는 CP 문화 촉진 및 관련 캠페인,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최고경영자는 CP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CP 운영을 총괄하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CP가 기업 운영의 최우선이 되는 정책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최고경영자는 CP 운영 및 제도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전담부서에 CP 운영에 관한 예산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⑤ 최고경영자는 CP 관련 사내 규정 등이 제·개정될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 ⑥ 최고경영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최고경영자의 권한)

- ① 최고경영자는 CP 운영에 관하여 최고 의사결정권한을 가진다.
- ② 최고경영자는 CP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 ③ 최고경영자는 CP 운영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제 2 절 자율준수관리자

제6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원급 직급을 가진 자로서 공정거래법규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거나 CP 운영을 포함하여 준법 경영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통해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준법지원인을 임명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지원인이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을 겸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법지원인 선임에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안전에 준법지원인이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사실이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임직원에게 공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되는 경우, 새로운 자율준수관리자가 선임되기 이전까지 준법지원인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준법지원인이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회사 내부 담당부서의 장이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및 권한)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 1. CP 운영 총괄
 - 2. CP 관련 회사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예산 및 조직 편성, 관련 사항의 요구
 - 3. CP 관련 사내 규정 등의 제·개정과 운영
 - 4.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직원 CP 교육
 - 5. CP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및 시정요구 등 후속조치
 - 6. 공정거래법규 및 CP 관련 사내 규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및 시정 요구, 위반자에 대한 제재 요구
 - 7. CP 활동결과 등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
 - 8. CP 운영 및 활동에 관한 문서·기록 등 관리
 - 9. 기타 C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비롯하여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 ②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본인의 결정에 따라 CP 전담부서 등에게 자신의 업무 또는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는 위임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 (CP 전담부서)

-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 직속의 CP 전담부서를 둔다.
- ② CP 전담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에 따른 CP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보좌
 2. 제7조 제3항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3. 자율준수관리자에 대한 CP 관련 사항의 보고 및 협의
 4. 공정거래법규의 제·개정 사항 및 CP 관련 사내 규정 등 관리
 5. 연간 CP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CP 관련 대외 인증 획득·유지 및 관리
 7. CP 관련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등 지원 활동
 8. 자율준수편람 관리
 9. CP 관련 사항 공지 및 홈페이지 게시
 10. 제15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제16조에 따른 효과성 평가 관련 활동
 11. 기타 효율적인 CP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전담부서의 독립성)

- ① 회사 및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전담부서 소속 임직원이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체의 부당한 지시 내지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최고경영자 및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대하여 CP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보고할 권한을 갖는다.
- ③ 전항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가 최고경영자 및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내용에는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위반행위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포함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전담부서 소속 임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하여 어떠한 부당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⑤ 회사 및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전담부서 소속 임직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당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게 될 위험이 있을 경우,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즉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제 3 절 임직원의 의무

제10조 (임직원의 의무)

- ①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법규 및 CP 관련 사내 규정 등과 자율준수편람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규 및 CP 관련 사내 규정 등 관련 위반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위반가능성을 인지하는 경우 또는 위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속하게 자율준수관리자, CP 전담부서 또는 법무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전담부서에서 실시하는 CP 교육(이 규정의 위임에 따라 회사 내 다른 부서가 실시하는 CP 교육을 포함한다)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공정거래법규 등을 위반하는 내용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직원이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거부하여야 하며,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의 이행을 강요받을 때에는 즉시 이를 내부신고제도 담당부서로 제보하여야 한다. 내부신고제도 담당부서는 이와 같은 제보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CP 전담부서에 알려야 한다.
- ⑤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준법 여부를 감독하고, 공정거래법규 및 CP 관련 사내 규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장 CP의 운영

제11조 (CP 운영 현황 및 성과 검토)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CP 운영 현황 및 성과를 검토하고, 그 내용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최고경영자는 전항의 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로 하여금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전항에 따른 대표이사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최고경영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율준수편람)

- ① 자율준수관리자와 CP 전담부서는 자율준수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규모, 구조, 사업 및 부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고객, 협력사, 정부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의견 또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

- ③ 자율준수편람은 조직의 각 업무별 또는 부문별로 구분되고 각 분야별로 자율점검을 위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 ④ 자율준수편람에는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에 대한 개요, 제재기준, CP운영 관련 사례, 판례, 행동지침, 질의응답, 회사의 부문 및 업무 등 분야별 자율점검을 위한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충실히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자율준수편람은 임직원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접근하여 쉽게 활용 가능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매체 형태로 작성·배포되어야 한다.
- ⑥ 자율준수관리자와 CP 전담부서는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를 사전에 정의하고, 자율준수편람을 해당 부서에 우선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CP 전담부서는 해당 부서의 자율준수편람 활용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⑦ 자율준수관리자와 CP 전담부서는 정기적으로 자율준수편람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율준수편람을 개정하여야 한다.
- ⑧ 자율준수관리자와 CP 전담부서는 전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정거래법규 또는 업무환경 및 관련정책의 변화, 회사규정의 변경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 (CP 교육)

- ①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전담부서는 임직원이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고 담당 업무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CP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 1. 정기적 CP 관련 교육 실시 계획
 - 2. 계층별·부서별·업무관련성별 차별화된 교육 실시 계획
 - 3. CP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 계획
 - 4. 교육 관련 예산의 반영 및 집행에 대한 사항
 - 5. CP 분야 전문지식, 업무 경험 및 경력 등을 포함한 CP 교육 강사 선정 기준
 - 6. 이전 교육의 효과성 평가결과 및 임직원 VOC, 해당 업계에서 특히 준수가 필요한 공정거래법규 및 CP 관련 사내 규정 등의 개정사항, 정책 방향 등의 반영 여부
 - 7. 교육 효과성 평가 계획

8. 교육 미이수자 또는 CP 위반자에 대한 보충 교육 또는 특별 교육(명칭을 불문한다) 방안
- ③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교육 대상 임직원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 ④ CP 전담부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임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보충 교육 또는 특별 교육(명칭을 불문한다)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CP 전담부서는 교육 미이수자 및 지연이수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 ⑥ 제2항 제7호에 따른 효과성 평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참석률, 학습자 만족도, 이수율, 학습성과 달성정도 등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4가지 이상의 합리적인 지표
 - 2. 효과성 평가 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및 절차
 - 3. 기타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 (사전업무협의제도)

- ①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업무협의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사전업무협의제도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CP전담부서, 법무, 구매부서 등 공정거래법규 준수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또는 최고이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이 주관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사전업무협의제도의 구축 및 운영, 사전업무협의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법규 위반행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제정·시행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위험성 평가)

- ①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전담부서는 임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규 위반 리스크를 식별하고,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전담부서는 필요한 경우 위험성 평가 업무와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 회사 내 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에 위험성 평가 업무를 의뢰하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위험성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전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 결과 식별된

위험성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위험성 평가는 연 1회 이상 회사의 운영목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전담부서는 위험성 경감을 위해 수행한 조치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위험성 평가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 ⑤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전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위험성 경감을 위해 마련·시행한 조치의 내용을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독립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효과성 평가)

- ①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전담부서는 실효성 있는 CP 운영을 위하여, CP 운영 현황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효과성 평가 업무와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 회사 내 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에 위험성 평가 업무를 의뢰하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효과성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전항 단서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전담부서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가 전항 본문에 따른 효과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본조에서 정한 사항은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및 CP 전담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효과성 평가를 수행할 인적 자원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자격: 전공, 공정거래법규 및 감사, 내부통제 업무 경험, 관련 자격증 보유 등
 - 2. 업무 범위: 이해상충부서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 종사자
- ④ 제1항에 따른 효과성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계획은 회사의 정기감사 계획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 ⑤ 전항의 계획에는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관련 정부정책, 이전 효과성 평가 결과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 ⑥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전담부서는 효과성 평가 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고,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개선 조치의 내용을 검토하여 추후 CP 운영을 개선하는 데 반영하여야 한다.
- ⑦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전담부서는 효과성 평가 결과와 관련된 기록을 회사의 다른 감사 기록과 독립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⑧ 자율준수관리자는 효과성 평가 결과를 최고경영자 및 최고이사결정기구에 독립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내부고발시스템

제17조 (내부고발시스템)

회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법규를 포함한 제반 법규의 위반 사실 또는 위반 가능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익명으로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는 고발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본 조에서 말하는 회사의 내부고발시스템의 자세한 운영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내부신고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제재 및 포상

제 1 절 제재

제18조 (원칙)

회사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규 및 이와 관련한 회사 내부지침 등을 위반한 임직원(이하 “위반행위자”)을 제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제재 절차)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절차와 기준은 회사가 정한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제재의 종류 및 기준)

- ① 공정거래법규 및 이와 관련한 회사 내부지침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별표 1]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임직원 또는 해당 부서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별표 1]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2. [별표 1]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임직원 또는 해당 부서의 장에 대한 주의와 시정명령을 발송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 주의 또는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았을 경우 인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가 전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부를 결정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인사위원회는 그에 따라 징계 여부 및 수준을 정한다.

- ④ 인사관리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인사관리규정을 우선한다.
- 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재에 관한 사항은 회사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 2 절 포상

제21조 (포상)

- ① 회사는 공정거래법규 준수 및 CP 확산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되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상 혜택을 포함한 포상을 할 수 있다.
 - 1. 공정거래법규 위반 예방에 공로가 큰 임직원
 - 2. 이 규정에서 정한 평가 결과, 공정거래법 준수행위가 지속적이거나 현저히 우수하여 모범이 되는 부서 및 담당자
 - 3. 공정거래법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그 성적이 우수한 자
 - 4. 내부고발자
 - 5. 기타 공정거래법규 준수 및 CP 확산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② CP 전담부서는 전항에 따른 포상 계획을 마련하여 매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전담부서로부터 보고받은 포상 계획을 검토한 다음 인사 부서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포상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포상에 관한 사항은 회사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 6 장 문서관리

제22조 (원칙)

- ① CP 전담부서는 CP 운영 및 활동과 관련되는 일체의 문서와 기록 등을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통제 하에 분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4조에 따른 사전업무협의제도 및 제15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와 관련이 있는 문서 등은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문서는 회사 내 다른 문서들과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로 보관·관리되어야 한다.
- ④ CP 전담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문서를 최소 3년간 보관한다.

제 7 장 기타

제23조 (개정)

- ① 회사는 반기마다 CP 관련 사내 규정 등(자율준수편람은 제외한다)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CP 관련 사내 규정 등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업무환경 및 공정거래법규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전담부서는 전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임직원 및 유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회사의 새로운 사규 또는 매뉴얼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 규정과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상충 시에는 자율준수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회사 내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규정과 회사 내 다른 규정이 명백히 충돌하는 경우 유관부서의 장이 협의하여 그 우선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 내부고발시스템에서 정한 사항은 별도의 내부신고제도 운영 규정을 우선한다.

제25조 (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CP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제정되는 규정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배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 04. 07.부터 시행한다.

[별표항목]

(별표 1)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별표 1)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이 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1. 견책 이상의 징계

- 가. 공정거래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규제당국으로부터 당해 행위의 중지(시정명령), 계약사항 내지 합의사항의 취소 및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 광고 등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받은 것과 관련된 경우
- 나. 공정거래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된 것과 관련된 경우
- 다. 공정거래법규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 라.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공정거래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받고 도 계속해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 마. 공정거래법규 위반 소지가 상당하여 향후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을 예상 하고도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전담부서 등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 바.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전담부서 등이 이 규정에 따라 요구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사. 내부고발자 또는 조사 전담부서 소속 임직원의 신분이나 신상, 인적사항 등을 내부 고발시스템을 운영하는 자 이외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정보보호 및 유출 등)
- 아.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공정거래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준수를 태만히 한 경우

2. 주의 또는 시정명령

- 가.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전담부서 등이 이 규정에 따라 요구한 보고서나 자료의 제출을 임의로 지연 또는 태만히 하거나, 상당한 부주의 또는 착오로 실제와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나. 이 규정에 따른 위험성 및 효과성 평가의 수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다.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전담부서 등이 이 규정에 따라 행한 지시사항 또는 시정 조치의 이행을 임의로 지연 또는 태만히 하거나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